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2. 20.(목)

국토부는 감리관련 제도개선 과정에서 업계와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, 2.20)>

- ◆ ‘검단사고’ 못막은 지정감리제... 오히려 확대?
대형건물도 지자체가 감리지정, 정부 “건축주와 감리 독립”
감리 품질 떨어질 것 반론도

□ 국토교통부는 「건설 카르텔 혁파방안」(’23.12) 마련시 감리-설계-시공간 상호견제(Check&Balance) 체계 구축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, 역량있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* (다중이용건축물) 5천㎡이상 문화·집회·판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

○ 그 후속조치로서 「건축법」 개정(’25.1.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)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,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격심사 방식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.

국토교통부	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	책임자	과 장	문석준 (044-201-3755)
		담당자	사무관	신재 호 (044-201-4754)